

# 대 구 고 등 법 원

## 제 3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0나5459 구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제 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단13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20.

판 결 선 고 2011. 8. 31.

### 주 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50,630원 및 그 중 84,191,53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4,259,1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57,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5.부터 2010.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00시 소재 'A보험 00지점 C

대리점') 그 보험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산출 및 영수, 보험계약자들로부터의 계약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신청 접수 및 원고에 대한 보고, 위험조사관리·상담 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2007. 11. 12. 원고를 대리하여 위 C대리점 건물의 건물주이자 동네 선배인 D와 사이에, D 소유의 00주0001호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7. 11. 12.부터 2008. 11. 12.까지, 피보험자는 D, 특약은 만 21세 이상 가족한정운전으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07. 9. 30. 경북 00라0000호 아반떼 승용차(만 26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입), ② 2007. 11. 12. 경북 00라0000호 갤로퍼 승용차(만 48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입), ③ 2007. 11. 12. 00주0001호 쏘나타 승용차(만 21세 이상 운전한정특약 가입)에 관한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D(1950. 6. 29.생)의 가족으로는 처 E(1956. 3. 23.생), 딸 F(1977. 9. 10.생), G(1978. 3. 15.생) 및 아들 H(1983. 12. 12.생)이 있었는데, 위 ① 차량은 G이, ② 차량은 D가, ③차량은 H이 주로 운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8. 2. 5. 위와 같은 3대의 차량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D로부터 특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위 ③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특약을 '만 21세 이상'에서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특약변경'이라 한다), D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도록 하였다.

라. H(만 24세)은 보험기간 내인 2008. 7. 11. 03:50경 위 ③차량을 운전하여 00시 C읍 00리에 있는 '경주-울산간 국도'를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대구000아0000호 화물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친 모집 경위서(갑 제18호증의 1, 2, 3) 및 D로부터 2차례에 걸친 확인서(갑 제17호증의 1, 2)를 받는 등 이 사건 특약변경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D가 2008. 9.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잘못하여 이 사건 특약변경 절차에서 적용되는 나이가 통상 불리는 나이가 아닌 '만 연령'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주 운전자인 H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특약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잘못 변경한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 2008. 9. 4.경 위 자술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본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거절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분쟁조정)신청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특약변경 및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8. 9. 8. D로부터 민원취回事서를 받으면서, 위 모집경위서, 확인서 및 자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 9. 22. D로부터 위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수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특약을 '만 21세 이상'으로 환원시킨 다음,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피해자 J 등에 대한 보험금 84,191,530원을 지급하였고, 2009. 2.경부터 2010. 12. 23. 까지 피해자 K 등에 대한 보험금 24,259,1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000, 000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1)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보험대리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가입자에 대한 봉사에 관한 업무 수탁 의무(제1조 제4호),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과 원고가 정한 여러 규칙과 지시를 준수할 의무(제3조), 계약내용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원고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처리할 의무(제4조 제2항)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나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바(제17조), 피고가 "보험가입자에게 연령한정특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운전자 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지침을 위반하여 D에게 만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H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약변경 업무를 처리한 것은 위 보험대리점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하게 될 보험금 중 우선 일부 청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보험대리점인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특약변경 업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D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정당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특약변경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인 D에게 아무런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D에게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좀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연령한정특약에 기한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피고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역시 위 (1)항과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주장에 대하여

먼저,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및 그 위반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약정한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초 연령한정특약은 주운전자인 H의 나이를 고려하여 '만 21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는 2007. 12.경 보험료 과다 부담을 이야기하는 D에게, 위 ③차량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특약을 26세 이상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감액된다고 안내하면서 위 차량의 주운전자인 H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D는 특약에 적용되는 연령이 '만 연령'임을 알지 못한 채 통상 집에서 사용하는 관습상의 나이로 계산하여 "내년 1월이 지나면 26세가 된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러자 피고는 2008. 2. 5.에 이르러 D로 하여금 특약변경에 필요한 서류(D의 신분증 사본, 환급금이 입금될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특약을 '만 21세 이상'에서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하여 준 점, ⑦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약변경 과정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불과한 D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운전자인 H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D의 위와 같은 대답만 듣고 만연히 이 사건 특약변경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특약변경 과

정에서 D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대리점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금 상당액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약변경시 H의 관습상의 나이는 26세라고 불렸으나 실제 '만 연령'은 24세에 불과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나름대로 이 사건 특약변경 경위를 조사한 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에 D가 피고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 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7,770원을 환급받고자 만 24세의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이 사건 특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보험금 상당액을 지출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한 대로의 연령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보험금 상당액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원고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다른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요컨대,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면할 수도 있었던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 D가 특약변경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어서 원고가 당초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고, 다만 특약변경으로 인하여 D에게 환급된 보험료 상당액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D가 그 환급액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분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보험업법에 기한 구상금 주장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는,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그 손해가 보험회사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대리점인 피고의 이 사건 특약변경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돈이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D로부터 보험료 차액 87,770 원을 환수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특약을 원래대로 환원한 다음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주장에 대하여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특약변경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D에게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연령한정특약에 기한 면책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변경 과정에서 D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도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특약변경 절차를 주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고도 D에게 허위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부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